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도

신미숙 주임/세무사
경제조사과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기업은 내용연수나 잔존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액법, 정률법 등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그러나 세법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의 대상자산,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정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회계상 감가상각비	-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 (-)시인부족액(세무조정 없음)

(1) 상각부인액

기업회계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각범위액의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시인부족액

기업회계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2.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제외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감가상각 대상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 건물 및 구축물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기계 및 장치
- 동물 및 식물
- 기타 위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②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댐사용권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2) 감가상각 제외자산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 제외)
② 건설중인 것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3) 기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3.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은 다음의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구분된 감가상각방법 중 법인에게 적절한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법인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방법

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

· 건물 및 구축물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건물 및 구축물외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정액법
· 광업권, 채취권 :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건물 및 구축물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건물 및 구축물외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 광업권, 채취권,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
·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 잔존가액

·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잔존가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0'으로 본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잔존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잔존가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연도에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후 동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을 의미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률'을 결정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①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구조·자산별」, 「업종별」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였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 한다.

② 신고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란 기준내용연수에 25% 가감한 범위내에서 기업 실정에 맞도록 선택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기업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연단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그밖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③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연수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부터 3월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④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감가상각비 제도 등 세제관련 개선의견 받습니다.
- 조사부 경제조사과
Tel : (02) 783-6501 / FAX : (02) 761-7775
e-mail : mi5101@klca.or.kr)